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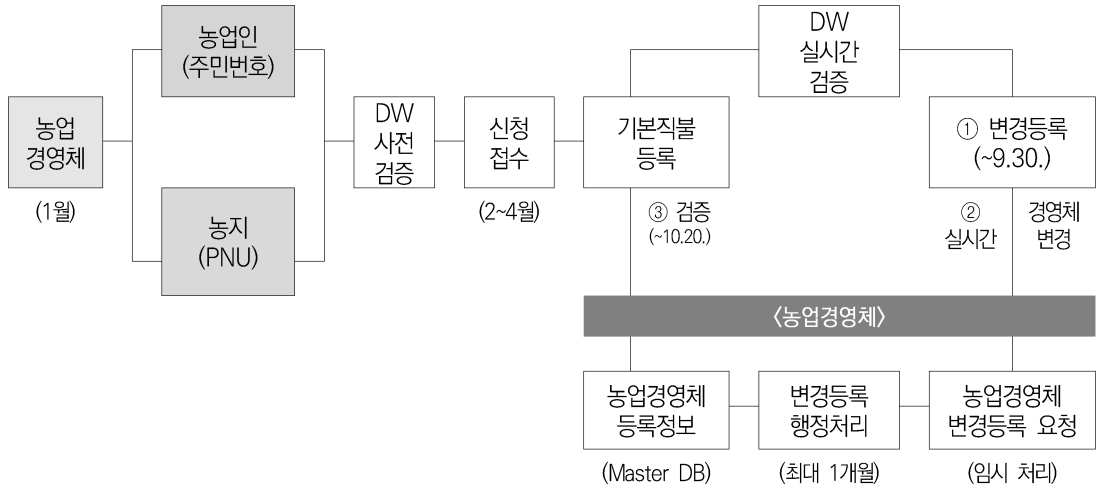
4 실경작,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실경작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신규등록자, 관외거주자이며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등 부정등록 우려요소 대량검증	▶(읍·면·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검토 ▶(농관원·지자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별도 정보제공) 중심으로 현장점검반 편성 후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 <u>현장조사 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u> ▶ <u>아울러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총 3인)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u>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 ~ 인지지원등급)	▶(읍·면·동)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전수 현장 조사하여 거주 여부(요양원 입원 등),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등록자가 영농종사하지 않고 가족 등이 실경작하는 경우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승계대상자가 없으면 등록취소
②농지 분할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 이외의 자가 기본직불 등록	▶확인되는 경우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등록취소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 ▶ <u><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u>
	▶농지대장, 농지은행, 국·공유지 등에서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본직불 등록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 <u><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u>
	▶농가 구성원 간의 임대차계약	▶동일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구성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을 통해 각각 기본직불 등록 여부 판단 ▶ <u><참고 16>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분할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조치</u> * 다만 자녀가 세대분리하지 아니한 후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인 경우 예외 처리

☑ 기본직불 등록 이후 DW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농지) 분·합필, 환지, 농지전용 등, (농업인) 사망·거주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

○ ① DW 검증(~9.30) → ② 경영체 변경등록(~10.15.) → ③ 기본직불 변경등록(~10.20.)

* 다만, 10.15일까지 경영체에 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제외



1 (DW 검증) 부적격(농지 : 분·합필, 환지, 농지전용 등, 농업인 : 사망·해외거주), 승계 등이 확인된 경우 경영체 변경 요청(~9.30.), 분합필등은 읍면동 확인 후 시스템에 전송(~8.30)

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변경등록 요청사항 중 지급과 관련 주요 정보의 농업경영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변경(10.15)

▽ 주요 변경대상 : 농지 분·합필 및 환지, 승계, 농지전용 등

* 농업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폐경/휴경 등은 기본직불 등록정보에서 직접 변경등록

* 농지 분·합필 및 환지 건에 대해서는 직불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농관원으로 전송

▽ 원활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에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활용 읍면동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공 등의

3 (기본직불 변경등록) 농지(분·합필 및 환지)에 대해서는 DW 자료(토지대장, 월말) 반영, 기타 경영체 변경된 자료는 실시간 반영

▽ (검증) 10.20일까지 기본직불 변경등록 중 농지 분합필 등 주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대상은 검증 후 농업경영체 미변경시 등록취소 대상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행정처리 기간(1개월) 등을 고려하여 10.20일까지 검증 예정

- ☑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정보 연계
- ☑ 기본직불 등록정보 입력·변경·취소는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읍·면·동 직불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접수 이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이력 관리
 - * 농식품부는 등록정보의 임의 수정하지 않고 검증 결과의 내용을 별도로 입력·표시
- ☑ 기본직불 지급은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이행되며, 등록정보와 지급이 다른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관리기관) 점검을 통해 환수 등 행정조치 예정

1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관리주체)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읍·면·동 직불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

▽ 다만, 등록정보의 임의 수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이후 정보의 변경을 위한 전산 개방은 제한적으로 운영

- ▶ (농식품부, 농관원)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열람, 조사·점검을 위한 자료의 추출,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 등 추진(등록정보의 수정·입력 이외의 모든 권한을 부여)
- ▶ (시·도) 관할 시·도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등록정보의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 (시·군·구) 관할 시·군·구의 등록정보 열람, 등록증 발급(5월) ~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등록정보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체 단위 개방 권한 부여
- ▶ (읍·면·동) (신청·접수)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의 자유로운 수정·변경·등록, (등록 이후)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변경등록 등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의 업무요청·승인을 받아 경영체 단위 수정, 등록취소 등 처리

▽ 기본직불 신청·접수기간 외의 기간에는 경영체 단위로 추가 등록할 수 없음. 다만, 등록대상자 확정 전에 행정과실로 등록 누락, 승계업무를 위하여 정보의 교환(기존 등록정보 삭제 → 승계자 신규등록)은 가능

3 (정보보안) 기본직불 등록정보 일체는 외부로 반출 또는 타용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파일삭제, 인쇄물 파쇄 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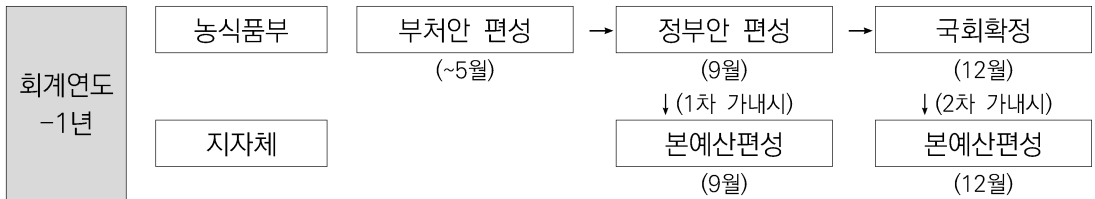
4 (벌칙)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10 보조금 예산편성~정산, 환수금 반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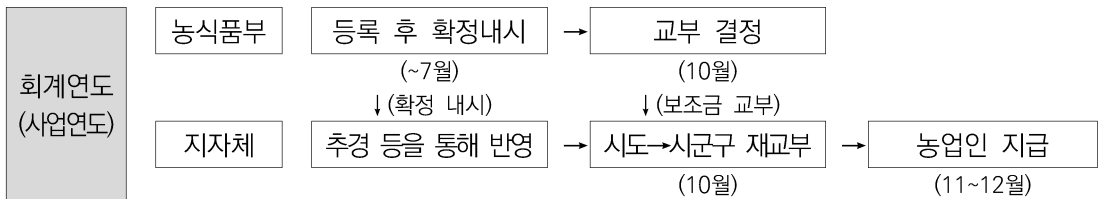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 예산편성, 교부(농식품부 → 지자체), 집행(지자체 → 농업인), 정산, 반납 등의 절차를 준수

① 예산편성(사업연도 직전) : 지자체는 사업연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안, 국회 확정안에 맞게 지자체 본예산편성

*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단가 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이 편성할 것으로 예상. 다만,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따라 지속 확대 가능



② 교부(사업연도) :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내시, 교부결정 통보 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사업연도 내에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확정 내시 금액이 본예산편성 금액과 상이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자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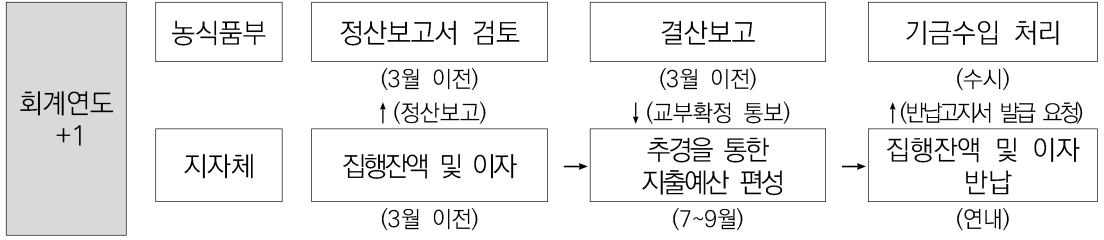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하고 시·도는 각 시·군·구의 예산에 맞게 재교부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시도 맵핑 작업 선행 필요하고 시·도는 e호조를 통해 각 시·군·구 사업 맵핑

▽ 시·군·구는 기본직불 시스템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집행

* (소농직불금) 관할 읍면동이 포함된 시·군·구, (면적직불금) 직불금 총액을 시·군·구 내의 농지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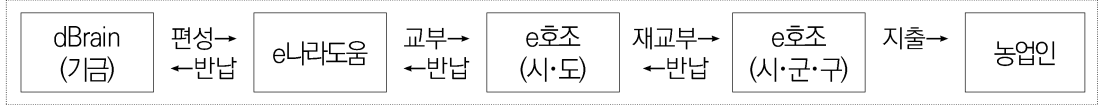
③ 정산(사업연도 직후) : 지자체는 보조금의 집행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연도 내에 반납 조치



-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정산 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3월 이전)
- ▽ 농식품부는 집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교부 확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3월 이전)
 - 교부 확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집행잔액을 연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지출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자 할 때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문서)

※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공익직불금(기본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전략작물), 지자체 행정경비, 도양검정비 등



④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반납 : 직불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 공익직불기금 수입계좌로 반납

- ▽ 시·군·구는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및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등록(수시)
- ▽ 시·군·구에서 환수금,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을 반납할 때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양곡부, 문서24 수신처)에 문서로 반납 통보
 - * 시·도는 시·군·구에서 반납한 내용(대상자, 금액)를 상시 관리

※ 지급된 직불금의 환수,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등은 공익직불기금에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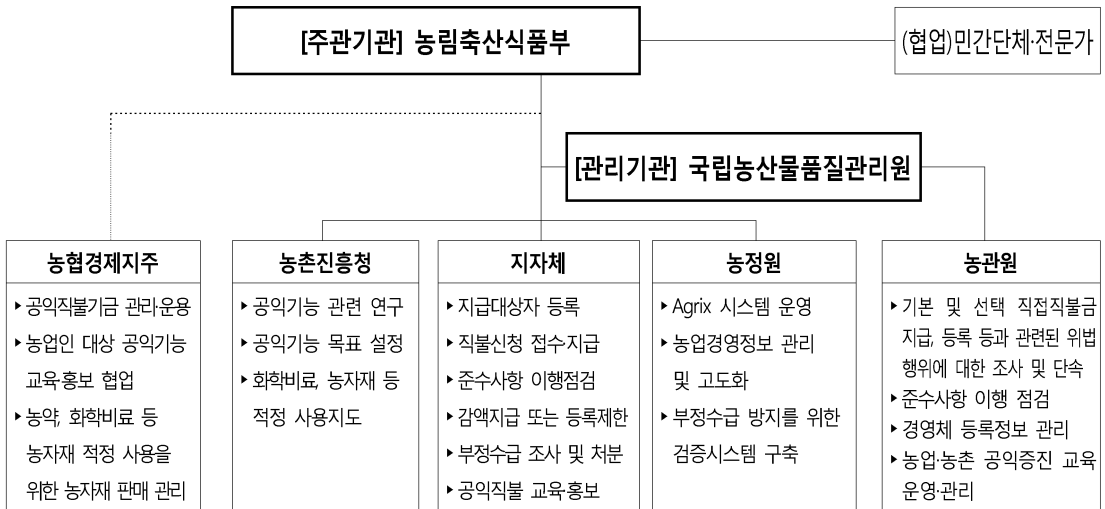
기본형 공익직불	301-0286-2693-51	친환경농업직불	301-0286-2705-71
경관보전직불	301-0286-2724-21	전략작물(논이모작)	301-0286-2731-61
쌀변동직불금	001-01-322590	쌀고정, 밭직불 등	농특회계(구조조정)

11 공익직불 지도·감독 등

가. 공익직불제의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부터 지급·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법 제38조)

* 대상 :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대상 농업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지자체

①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② (관리업무 분야) 공익직불제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농업인, 교육기관 등 지도, 조사 및 단속(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등록, 변경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 ▽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선택직접지불금 지급제한·환수, 지급대상자 선정·등록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지도 및 단속

③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관리기관은 농식품부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 결과를 매년 11.30일까지 보고

- ▽ 농관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점 점검항목은 매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

기본직불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일정

기관 구분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정원)	지침 수립, 홍보물·교육자료 제작 등			공고	사업추진상황 총괄관리										교부	평가 및 계획수립	
	시스템 개선			사전 검증	비대면 운영	시스템 접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지원										
				Agrix콜센터 운영, 문자발송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계획 수립	준수사항 사전 조사			준수사항 현장 조사									
				계획 수립	부정수급 기획조사			(농관원·지자체)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관원·지자체)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시·군·구										등록증 발급						직불금 지급	
읍·면·동				이동장 교육	비대면 접수	방문접수					변경 등록						
농촌진흥청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화학비료 토양검정								
농협경제지주				품목별 작목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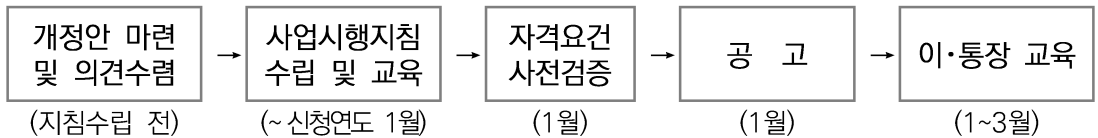
III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전년도 12~ 신청연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②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③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각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각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④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 현장점검(5~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⑤ 지급금액 산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⑥ 직불금 지급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직불금 지급 완료 후 15일 이상)
⑦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1 사업 준비단계

- 가.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직불사업 시행지침 수립
- 나. 소농직불금 단가인상(130만원)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마을 단위 이·통장 등에게 공익직불사업 관련 교육 추진



① (지침개정) 법령 개정사항, 관계기관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등록연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전년도 12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 처리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공고 등) 농식품부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일 7일 전까지 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을 공고(1월)

* 농관원, 지자체는 농식품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마을방송, 현수막, 지방신문 등을 활용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

③ (교육·홍보) 농관원,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또는 이·통장, 농업인 등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교육 추진(1~3월)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대상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순회 교육 추진

* 농업인등, 이·통장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및 직불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홍보 자료 제작·배포

▽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신규등록대상 농업인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전년도 12~2월, 지자체), '품목별 작목반 교육'(3~9월, 농협)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준수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 (농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안내, 기본직불 등록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홍보계획을 수립·추진
- ▽ (시도·시군구) 농식품부 공고문,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지방신문,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대상 신청·접수 안내(2~4월)
- ▽ (읍·면·동) 읍·면·동은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 이·통장 대상 교육 추진(1~2월)
 - * 아울러 매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을 이·통장에게 안내하여 농업 현장 혼란 최소화

《 교육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직불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마을 농업인의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 마을 단위 실경작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안내 ▶ 비대면 간편 신청 홍보 및 고령 농업인에 대한 신청·접수 업무대행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등

④ (시스템 운영) 기본직불 사전정보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농식품부, ~ 신청연도 1월)

- ▽ (사전DB 구축)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주민정보)·농지(PNU)를 기준(전년도 12월)으로 기본직불 신청·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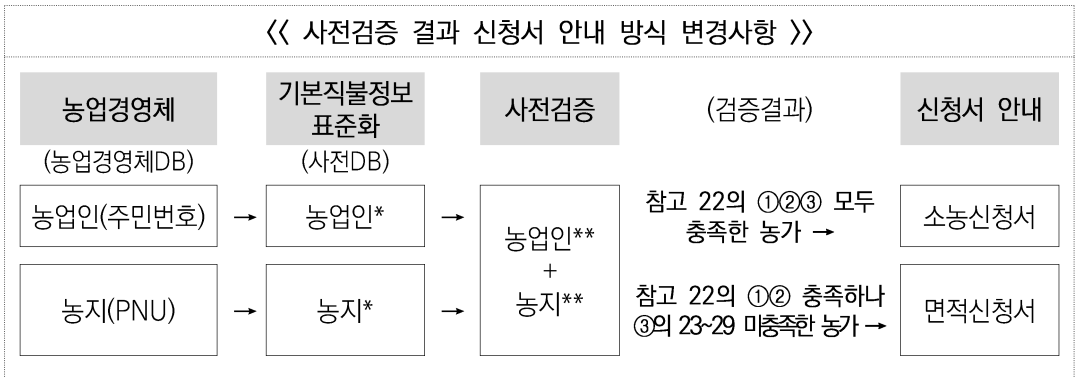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정보) 주소 - 도로명/지번 ▶ (가족관계) 직불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파악 관리 ▶ (토지대장) 소유주, 지목, 면적, 토지주소, 말소, 진흥/비진흥 등 ▶ (농지대장) 임대차정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농지전용 등 ▶ (직불제이행점검시스템) 1719 실태조사 결과 포함 기준연도 논·밭, 재배면적, 폐경 등 ▶ (기본직불등록정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마을정보 등

- ▽ (사전검증)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 자격요건(참고 20)에 대하여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 대상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 신청서 인쇄 구축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부정수급자, 사망자 등은 신청서 인쇄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농지대장의 부적격(농지전용, 농지처분명령), 간척지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소유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지(①)와 농업인(②)의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읍면동 추가 검토 사항은 신청서 인쇄와 더불어 별지 서식에 부적격인 사항 및 조치 안내(참고 25)
 - 신규대상자, 직전년도 면적직불 지급한 농가 등 상관없이 사전검증 결과 소농직불 자격요건(③)이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 신청서로 안내
- * 이 경우 G4C 및 Mydata를 통해 ④-1(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④-2(주민등록등본에서는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농가 구성원)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제공



- 직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신청·접수 전 사전검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대상으로 분류되며,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약등급 판정자(I~인지지원등급)는 비대면 대상에서 제외

* 비대면 신청자는 스마트폰 및 AR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기능개선) 사전DB, 사전검증 결과 등을 읍·면·동 직불담당자가 기본직불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비대면 간편 신청한 농업인의 농지·농업인·농가 구성원의 정보는 사전검증 데이터를 활용하되, 사전검증 결과가 소농이면 소농으로 접수하고 그 외에는 면적으로 접수
- 사전검증 결과 '농업인 체크리스트 안내문'(참고 26)의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승계처리, 기본직불-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 연계 등 전년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기능의 개선

※ 사전검증 결과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의 부적격 확인되면 제공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농업인 확인 사항 사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등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해 드리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후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추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경작하지도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거부, 직불금 환수, 등록 제한, 제재부가금 부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점검항목	발생원인	증빙
농지 자격요건	▶임대차계약 미비 또는 종료 (필지 정보)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음 ▶농지소유자가 변경되어 계약서 갱신 필요	농지대장 등록·갱신 (국공유지 포함)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필지 정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읍·면·동 확인
	▶농업법인 소유농지 (필지 정보)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없음	읍·면·동 확인
	▶지목이 임야로 확인되나 농지대장 미등록 (필지 정보)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	농지대장 등록
농업인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도시 거주자 중 주소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0.1ha 미만 ▶도시 거주자 중 시·군·구의 농지면적이 1ha 미만	읍·면·동 확인
	▶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내역 미확인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경작 증빙 필요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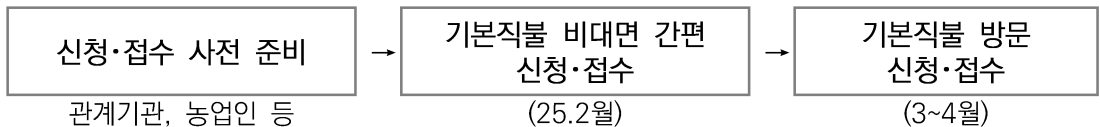
구분	점검항목	발생원인	증빙
	▶관외경작 확인	▶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50km 이상으로 확인되었음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동장)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인지지원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실경작 여부 추가 확인 필요	읍·면·동 확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복지부에 통지 (농식품부)
	▶환수금 미납 확인	▶직불금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읍·면·동 확인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미충족	▶전년도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영농종사 여부가 미확인	읍·면·동 확인
소농직불 자격요건	▶농가 구성원의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토지대장에서 전·답·과수원(농지) 중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ha 이상 *토지대장상 전·답·과수원이나 농지로 미이용 *공동소유로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과다계상	읍·면·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소득 추정액이 3800만원 이상	▶시설재배업 단위 면적당 품목별 소득(=총수입-경영비) 3800만원 이상 추정	읍·면·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시설재배업소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추정액이 5600만원 이상	▶축산업 축종당 마리당 소득(=총수입-경영비) 5600만원 이상 추정	읍·면·동에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 (직전 연도 축산업소득)
<p>기본직불금 대면 등록신청·접수 기간 중(3~4월)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또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농지대장 등록·갱신,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등 소요 기간으로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사전 알리고 요청 기한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만일,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이 9.30일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참고 27 비대면·방문 신청·접수대상자 구분

※ 세부적인 운영 방향은 사전정보 구축, 검증시스템 운영, 비대면 접수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안내할 계획

검증방향		접수 구분	접수 방법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신청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비대면 (온라인)	방문 (읍면동)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중 임야가 없는 경우)	⇒ 비대면 접수대상 (온라인 미접수시 신청서 인쇄·배포)	2.1~28.	3.4~4.30.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배포)	X	3.4~4.30.
지급대상 농지·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지·관외경작자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배포)	X	3.4~4.30.
- (미신청, 등록제외) 신규등록자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 방문접수 (방문하여 신청서 출력)	X	3.4~4.30.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미충족	⇒ 방문접수 (신청서 인쇄 불가, 신규 작성) * 신청접수는 하되 자격검증결과 부적격으로 등록거부 예상	X	3.4~4.30.

- 가. 차질 없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및 접수를 위하여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이·통장, 농업인 등에게 교육·홍보 등 안내
- 나. 기본직불 사전DB 구축,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신청자와 방문 신청자로 구분하여 접수
- 다. 읍·면·동에서는 농업인 등 방문 신청·접수 시 접수 누락(또는 행정 과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내 및 신청서 관리 철저



① (사전 준비)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 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추진(~'25.1월)

- ▽ (농식품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농식품부·농관원·시도·농정원 직불담당자 대상으로 '사업관리반' 구성·운영
- 신청·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
 -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1월 중), 방문 신청대상자(2월 중)에게 문자 등을 통해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 (농관원) 지원·사무소 업무담당자 교육(현장조사원 포함), 농업인 대상 준수사항 실천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등
-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홍보 확대
- ▽ (시·도, 시·군·구) 관련 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직불담당자는 원활한 기본직불사업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업무담당자 자체 교육 및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